



국토교통부

제안요청서

사업명	전자토지수용시스템 구축 관련 전제사항 등 연구
주관기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2022. 4.

||| 목 차 |||

I. 과업개요	1
II. 입찰 참가자격 및 계약 방법	4
III. 제안서 작성 및 제출	5
IV. 과업수행자 선정방법	7
V. 평가방법 및 기준	9
붙임 : 제안관련 서식일람	11

1. 과업명 : 전자토지수용시스템 구축 관련 전제사항 등 연구

2. 추진 배경

- 토지수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재결 행정의 실시를 위해 '16년에 토지재결정보시스템(LTIS : Land Tribunal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
 - 다만, 서면 중심의 재결업무 특성과 행정 업무처리 중심으로 토지재결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어 실제 토지수용의 주체인 국민의 재결과정의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
 - 또한, 국가 주도의 공익사업이 확대되는 등 재결 관련 제반 환경이 다변화하여 재결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다양화됨에 따라 차세대 토지재결정보시스템 구현을 통한 적극 대응이 필요
- 따라서 재결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수준을 대폭 제고하기 위해 전자재결 시스템 기능 구축 등을 통한 “전자토지수용시스템(LTSS : Land Tribunal Supports System. 가칭)”을 마련하고자 하며,
 - 전자토지수용시스템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 토지수용 행정절차(수용·이의재결, 감정평가 등), 행정심판 등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 전체를 전자적으로 구현하며, 더불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처리 신청 및 처리과정 안내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제공
- 이번 과업을 통해 전자토지수용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기능적·운영적 요건을 구분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 장·단기 구축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정보화연구용역(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에서의 활용 등을 통한 신속한 전자토지수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 용역 내용

- ▶ 전자토지수용시스템(LTSS) 구축 방향성 검토
- ▶ 전자토지수용시스템(LTSS) 구축에 필요한 요인 분석
- ▶ 전자토지수용시스템(LTSS) 단계별 구축계획 마련

□ 전자토지수용시스템 구축 방향성 검토

- 토지재결정보시스템 관련 해외 제도 비교·분석 및 유사 토지재결정보시스템 운영 실태 분석
- 대국민 전자 행정 시스템 운영 실태 분석 및 기능 비교(전자소송 시스템, 토지매수시스템 등 국내·외 유사 시스템)
- 전자토지수용시스템 도입에 따른 행정효율성 및 국민 편의 등에 관한 경제성 분석 및 기대효과 제시

□ 전자토지수용시스템에 필요한 요인 분석(제도·기능·운영 측면 구분)

- 제도적 요인
 - 전자재결 기능 등 전자토지수용시스템 구축 및 기능 구현(전자송달, 개인정보 수집·활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관련 법 제도 분석
 - 전자토지수용시스템 구축 및 기능 구현에 관한 법령 개선 필요사항 검출
 - 전자토지수용시스템 구축 및 기능 구현에 관한 법령 개정안 제시 (전자토지수용시스템 구축·기능구현,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에 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시 필수)
- 기능(시설)적 요인
 - 전자토지수용시스템의 주요 수행 기능에 관한 수요조사(유사 시스템 기능 분석, 담당 공무원·국민·평가사·시스템 운영사 등 관계자 의견 청취)
 - 기능 개발에 관한 정보화연구용역(ISP) 추진 계획안 제시
- 운영(행정)적 요인
 - 전자토지수용시스템 개발·구축·운영 등에 관한 운영체계 개선 필요성 검토

□ 전자토지수용시스템 단계별 구축계획 마련

- 전자토지수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인에 대해 중요도·영향력·구축비용·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축 우선순위 검토
- 구축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전자토지수용시스템의 구축전략과 단계별 구축계획을 마련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5. 소요예산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입찰 참가자격 및 계약 방법

1.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비영리기관의 경우 1)~2) 충족하면 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 시 확인서 제출요)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50매 이내로 하며 아래한글 작성을 원칙
- 실적, 내부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하여 제출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3.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처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파일 제출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044-201-5307, 5347)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첨부
 -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1. 평가기준 및 방법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배분 비율은 기술평가 80% 및 가격평가 20%로 함
 - 기술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를 산출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 제안서의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세부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낙찰자 통보 : 협상이 성립되어 선정된 사업수행 대상기관은 개별 통지함

2. 협상방법

- 가격협상은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주의사항

- 제안자는 평가절차, 평가방법, 협상대상자, 낙찰자 선정결과에 대해

근거 유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의 요구 내용에 맞지 않거나 과업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V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술성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요소		배점	체크포인트	평가방법	점수
1	기관 평가	10	- 기관예산규모(정부출연금 포함) - 관련 연구인력(석, 박사 등) 보유 수	계량 평가	주1)
2	입찰참가 제한 등 징계	10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 (최근 3년 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계량 평가	주2)
3	투입인력	15	-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 프로젝트 수행경험, 학력, 전문성 정도 등	비계량 평가	주3)
4	기술·지식능력 (과업 접근방법)	30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정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비계량 평가	주3)
5	과업 수행계획	20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평가	주3)
6	기타	15	-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등 기타 특기사항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	비계량 평가	주3)
계		100			

주1) 계량평가 (10점)

- 기관 예산규모(5점)

구분	15억원 초과	10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점수	5	3	1

* 기관 예산규모는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직전년도 예산기준

- 연구인력(석사·박사) 보유수(5점)

구 분	10인 이상	5인-10인	5인 미만
점 수	5	3	1

※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도시계획학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전공 및 감정평가사 자격 보유수

주2) 계량평가 (10점)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횟수(10점)

구 분	0회	1회	2회	3회 이상
점 수	10	8	6	0

주3) 비계량평가 (80점)

- 용역수행 정도에 따라 아래 점수비율로 배분하여 합산 평가

항목 구분	평가 정도				
	매우우수 (배점×100%)	우수 (배점×90%)	보통 (배점×80%)	다소 미흡 (배점×70%)	미흡 (배점×60%)
투입인력	15	13.5	12	10.5	9
기술·지식능력 (과업 접근방법)	30	27	24	21	18
과업 수행계획	20	18	16	14	12
기타	15	13.5	12	10.5	9

○ 평가점수 산정

- 점수: 기술능력평가득점 × 80%

※ 기술능력평가 득점은 업체별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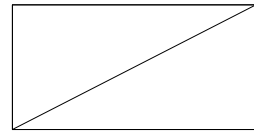
2. 입찰가격 평가(2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제안관련 서식 일람

1. 과업제안서 표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3. 용역(연구) 수행실적
4. 관련 연구분야 인력 보유 현황
5.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연구진 이력 사항
6. 서약서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1>



과업제안서

용역명 : 전자토지수용시스템 구축 관련 전제사항 등
연구

기관명 : (인)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예산규모 * 정부출연금 포함	2020년	2021년	2022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용역(연구) 수행실적

건 명	개 요	용역금액	발주처	계약일	착수일	준공일	비 고

- 주) 1. 용역 실적은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국가 및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토지이용, 토지수용보상 또는 공공행정, 재정분야 관련 연구 용역으로서 완료된 사업에 한한다.
2.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4.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서식 4>

관련 연구분야 인력보유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연구인력 평가를 위한 자료로 제안자의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외부 참여자는 제외)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금액	

- 주)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참여경력 기재

<서식 6>

서 약 서

상호(법인)명 :

주 소 :

본인은 『 전자토지수용시스템 구축 관련 전제사항 등 연구 』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움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익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약자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과업 제안서 편철 순서

1. 과업제안서 표지 (서식 1 활용)
2. 제안서 내용 (A4용지로, “아래한글” 활용요망)
3.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 2 활용)
4. 용역(연구) 수행실적 (서식 3 활용)
5. 관련 연구분야 인력 현황 (서식 4 활용)
6.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연구직 이력사항 (서식 5 활용)
7. 서약서(서식 6 활용)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 7 활용)

※ 첨부자료

- 각종 증빙자료 (실적증명서류 등 관련증빙자료)
-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